

지역·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·결정

[]협의
[]변경협의

요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사업시행자	성명(명칭)					
	주소					
	우편물 수령지 (전화번호 :)					
협의대상 농지	위치	번지 외 필지				
	면적 (㎡)	구분	계	답	전(과)	농지개량시설부지 등 사실상 농지
		농업진흥구역				
		농업보호구역				
		농업진흥지역 밖				
		계				
사업예정부지 총면적 (비농지 포함)	㎡ (농업진흥지역 : ㎡)					
협의요청일자	년 월 일					
사업기간	착공예정일			준공예정일		
	년 월 일			년 월 일		
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						
협의 목적						

「농지법」 제43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·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·결정을 위한 []협의 []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협의요청 기관장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귀하
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첨부
서류

1. 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
 - 가. 지정·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·지구 및 구역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등”이라 합니다)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
 - 1)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
 - 가)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
 - 나)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
 - 다)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
 - 라)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(지역등의 지정·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,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)과 그 조치 계획
 - 2) 지역등의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자·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
 - 3)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) 1부
 - 4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- 5)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0조제2항제1호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 및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),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
 - 6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결과(「농지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농지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합니다) 1부
 - 7)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
 - 나. 지정·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
 - 1) 가목1)부터 5)까지에 따른 서류
 - 2)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
 - 다. 지정·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
 - 1) 가목1)부터 5)까지에 따른 서류
 - 2)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
2.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
 - 1) 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에 따른 서류
 - 2)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·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